군산시 공고 제2021-133호

「군산시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건축법」,「건축법 시행령」개정 및「건축물관리법」제정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에 대한 조문 내용의 수정·보완 등 정비하여 건축조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조례 목적에 상위법 추가(안 제1조)

나. 건축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건축물의 건축심의 제외(안 제4조)

다. 부유식 건축물의 적용의 완화 기준을 따로 고시하는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라. 가설건축물의 4층 이상 및 도시계획(예정)시설 내 축조제한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관련규정 삭제(안 제28조)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마.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산업단지 내 공장의 사용검사 면제규정 삭제(안 제29조)

바. 건축사 현장확인 대행업무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확대(안 제32조)

사. 건축물의 유지·관리 관련규정이 「건축물관리법」 으로 제정·이관되어 조문 정비(안 제33조)

1) 상위법 변경·이관사항 반영 (건축법 조항 삭제 ⇒건축물 관리법 제정)

2) 정기·긴급점검, 노후 소규모 건축물 점검 등 점검대상 건축물 지정 등

아. 건축선 후퇴한 공지의 활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 위임되지 아니한 활용 제한(규제) 규정 삭제(안 제43조)

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제명 개정되어 법명 변경(안 제45조)

차. 공개공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정하여 공개공지 활용성 제고(안 제46조)

1) 공개공지 활용 사전 신고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 명시

2)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등 서식 신설

카. 이행강제금 감경규정 관련조항 및 시효 정비(안 제47조)

1)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거용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 정비

- 연면적 “85㎡” 를 “60㎡” 로 변경 및 부과횟수 4회 제한규정 삭제

2) 축사 등 농·어업용건축물 20% 감경시한 “2018년 3월 24일” 을 “최초의 시정명령 이후 1년” 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TEL : 454-4302, FAX : 063-454-4299, 전자우편 jbk210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063-454-43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과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 시행령」,「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건축물(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는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를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창고, 군산시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인 건축물 및 공모방식에 의하여 설계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의 완화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조 및”을 “법 제11조, 제14조 및”으로, “건축허가(허가변경”을 “건축허가, 건축신고(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용도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를 각각 “군산지역”으로 한다.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제33조제1항 중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물에 가해진 충격·화염 등으로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반상태의 변화로 붕괴·전도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건축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 등의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로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의 건축자산 건축물을 말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6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로 한다.

제4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공개공지 활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개공지등에 대한 사용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⑦ 영 제27조의2제7항제5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1. 소음, 악취, 시각적 표시 등으로 건축물의 이용자 및 보행자 등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

2. 도로 등 공개공지 외의 장소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

⑧ 사용이 종료되면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활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70%를 적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별표 4]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연면적 합계	허가(신고)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5% 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 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 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50% 이상 금액

1. “대가기준”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기타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70%를 적용한다.
3.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50%를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6.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 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7. 위 대가기준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 군산시 건축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공개공지 활용 신고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공개공지 등	위 치	군산시		
	면 적	공개공지등 ㎡	활용면적 ㎡	
	활용기간	금회 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활용누계 : 일, 종전의 활용일수 일)		
	활용목적			
	활용인원	활용기간 중 활용 연인원 명, 일시 최대 활용인원 명		
	활용시간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활용)		
	세부 활용계획			
경 유		년 월 일	읍.면.동장 (서명 또는 인)	

※ 공개공지에 대한 활용 가능 일수는 연간 60일 이내입니다.

「군산시 건축조례」 제46조제5항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행사)계획서 1부. 2. 공개공지 활용 및 행사용품 등 배치계획이 표시된 배치도 1부. 3. 건축물 이용자 및 보행자 등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질서유지 계획서 1부. 4. 원상복구 계획서 1부.
유의사항	1. 신고자는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입니다. 2.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 동 7항 및 군산시 건축조례 제46조 제7항, 제8항 규정을 준수하여야합니다. 3. 상기내용 및 신청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 군산시 건축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공개공지 활용 신고 증명서

신고번호	년 공개공지 활용신고 제 호			
신 고 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공개공지 등	위 치	군산시		
	면 적	공개공지등 ㎡	활용면적 ㎡	
	활용기간	금회 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활용누계 : 일, 종전의 활용일수 일)		
	활용목적			
	활용인원	활용기간 중 활용 연인원 명, 일시 최대 활용인원 명		
	활용시간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활용)		
	세부 활용계획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공지 활용신고서에 따라「군산시 건축조례」 제46조제9항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유의사항	1. 신고자는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입니다. 2.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 동 7항 및 군산시 건축조례 제46조 제7항, 제8항 규정을 준수하여야합니다. 3. 상기내용 및 신청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에 대한 활용 가능 일수는 연간 60일 이내입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 군산시 건축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공개공지 활용 신고대장

(단위 : ㎡)

신고번호	신고일자	공개공지 현황		공개공지 활용내용			신고자	
		대지위치	공개공지면적 활용면적	공개공지 활용목적	금회활용 기간(일)	누적 사용일	성명	연락처
` 년 제 호	/				~ (일)	일		
` 년 제 호	/				~ (일)	일		
` 년 제 호	/				~ (일)	일		
` 년 제 호	/				~ (일)	일		
` 년 제 호	/				~ (일)	일		
` 년 제 호	/				~ (일)	일		
` 년 제 호	/				~ (일)	일		
` 년 제 호	/				~ (일)	일		
` 년 제 호	/				일	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과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 시행령」,「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4조(건축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전라북도 건축조례」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조(건축심의대상) ①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25m 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는 제외하며 바닥면	나. ---------- ---------- ---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지에 건축하는 공장, 창고, 군산시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인 건축물 및 공모방식에 의하여 설계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의 완화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가설 건축물) ①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1.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일 것.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	<삭 제>
제3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	제3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건축물----------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허가변경을 포함한다)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한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1. 법 제11조, 제14조 및 --- 건축허가, 건축신고(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 용도변경허가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건축물----------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정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추첨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	2. -------- 군산지역 -------- ---------- ---------- ----------. ---- ----------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재 추첨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 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④ ---------- 군산지역 ----------.
⑤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산지역 ----------.
제3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물에 가해진 충격·화염 등으로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반상태의 변화로 붕괴·전도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 등의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로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 설>	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의 건축자산 건축물을 말한다.
제43조(대지안의 공지) ① (생략)	제43조(대지안의 공지) ① (현행과 같음)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② 별표 5 제1호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보행로, 조경, 예술장식품, 조명, 벤치 등 가로변 미관증진과 시민휴게공간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선 후퇴부분의 도심가로변 미관향상을 위하여 상품전시공간,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⑤ (생략) 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 ----------.
제4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④ (생 략)	제4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되 지나친 소음 등으로 공중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공개공지 활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신 설>	⑥ 공개공지등에 대한 사용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신 설>	⑦ 영 제27조의2제7항제5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음, 악취, 시각적 표시 등으로 건축물의 이용자 및 보행자 등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 2. 도로 등 공개공지 외의 장소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
<신 설>	⑧ 사용이 종료되면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활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 60제곱미터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법80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4회 이내로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3월 24일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건축신고 업무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 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78,157천원으로 1억원 미만에 해당
  - 엔지니어링대가(건축사) : '20.기준 : 367,885원
  - 지급률(허가) : 30% (연면적 합계 495㎡(주거용 660)미만 적용)
  - 신고 적용률 : 허가 지급률 × 70%
  - 대상건수 : 신고처리 415, 사용승인 358건(최근3개년 평균)
  - 건축신고 : 367,885원×415건×30%×70% = 32,061천원
  - 사용승인 : 367,885원×358건×50%×70% = 46,096천원
  - **산 출 액 : 78,157천원(연간)**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연락처	063-454-4290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군산시 공고 제 2021-188호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감사종류에 성과감사를 추가하고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감사결과 주의요구 처분에 대한 경중 및 명확한 구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의 종류에 성과감사를 추가함(안 제3조)

나. 감사결과 주의요구 처분에 대한 경중 및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정함 (안 제20조제2항)

다. 감사결과 공개조항을 신설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감사담당관(☎063-454-2113, FAX 454-2109)

○ 전자우편 : wsh3831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감사계(☎063-454-21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 · 사업 · 조직 · 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제20조제2항 중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감사의 종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0조(감사결과의 처분) ① (생 략)	제20조(감사결과의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
<신 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2.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신 설>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6조 ~ 제28조 (생 략)	제27조 ~ 제29조 (현행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군산시 고시 제2021-1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도로·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도로·주차장)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22일

군 산 시 장

Ⅰ.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폐지)조서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7	대로1-6북측	완충녹지	나운동280-3전 일원	1,800	감)1,800	-	전북고41 (95.3.8)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2	187	17	보조간선 도로	30	나운동 중로1-13	나운동 156-2	일반 도로	-	금회	노선신설

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22	주차장	나운동 156-1	-	증) 1,273.5	1,273.5	금회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게재생략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군산시 고시 제2021-20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 및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군 산 시 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 고
○ **일반명단 제공(인쇄물)** - A4용지 1매당 = 71원 - 100매 기준 = 7,100원 ○ **라벨용 명단 제공** - 라벨용지 1매당 = 291원 - 100매 기준 : 2,910원	○ **광학식디스크(CD-R)** - (1,300원×광학식디스크 개수) + (26원×면수)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군산시 공고 제2021-117호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

연번	안 건 명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9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월 19일

군 산 시 장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군산시 공고 제2021-137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군 산 시 장

1. 신조공인등록 연월일 : 2021년 1월 21일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21년 1월 21일
3. 신조등록공인 및 인영(2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조	군산시경제항만혁신국 새만금에너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새만금에너지과
	군산시복지환경국 산림녹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소속변경	산림녹지과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4.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2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폐기사유	관리부서
폐기	군산시에너지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에너지담당관
	군산시경제항만혁신국 산림녹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소속변경	산림녹지과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군산시 공고 제2021-169호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

군산시 옥도면「고군산군도 내부도로(신시선 1공구) 개설공사」시행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을 위하여『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선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군 산 시 장

□ 고군산군도 내부도로(신시선 1공구) 개설공사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 (폐지/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옥도면	리도	신시선	옥도 208	신시도리 204	신시도리 250	1.28	신시도	6.5~8.5	6.5	도 로 확포장

1. 사 업 명 : 고군산군도 내부도로(신시선 1공구) 개설공사
2.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28km, B=6.5~8.5m
3. 사업기간 : 2018. 1. ~ 2023. 12.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
5.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1. 1. 28.~2021. 2. 11.)
6. 열람장소 : 군산시청 건설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82)로 문의바랍니다.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붙 임]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9-6 (9-2)	답	15.4	15.4	박남수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1	군산연예농업협동조합	군산시 하포로 29		
2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9-3	도	143.6	123.1	국(국토해양부)					
3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9-4	답	5.0	5.0	국(국토해양부)					
4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9-5	답	6.0	6.0	국(국토해양부)					
5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2-1	도	318.4	160.2	국(국토해양부)					
6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3	도	488.0	38.3	국(국토해양부)					
7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5 (14-1)	전	262.2	262.2	박남근	군산시 용둔길 12, 102동 503호				8/9
						문인숙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길 34				1/9
8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2	전	469.3	469.3	군산시					
9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4	도	170.0	43.7	국(국토해양부)					
10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5	도	1153.2	10.4	국(국토해양부)					
1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6-2	도	2.0	1.1	국(국토해양부)					
12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7	도	361.7	51.0	국(국토해양부)					
13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8	도	484.4	304.5	국(국토해양부)					
14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8-6 (18-2)	전	8.0	8.0	송다희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16번길 32-15, 401호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군산시 조촌로 123		
15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8-4	도	105.6	57.6	국(국토해양부)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8-5	도	6866.1	215.8	국(국토해양부)					
17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9	도	306.6	200.6	국(국토해양부)					
18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2-10(22)	대	18.2	18.2	신시도어촌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31	군산시어업협동조합	군산시 죽성도 26-2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군산시 금암동 1-10		
19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2-11(22-1)	대	194.6	194.6	서홍석	대전시중구 문화동 372-2 평화아파트 415호				
20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2-5	도	911.8	153.7	국(건설부)					
2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39-10	도	1716.6	23.9	국(국토해양부)					
22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39-13	도	1694.6	133.0	국(국토해양부)					
23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39-19	도	350.5	37.1	국(국토해양부)					
24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1	도	881.6	35.7	국(국토해양부)					
25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2-3(142)	대	235.3	235.3	서홍석	대전시중구 문화동 372-2 평화아파트 415호				
26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2-1	도	207.0	4.8	국(국토해양부)					
27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2-2	도	326.5	151.3	국(국토해양부)					
28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3	도	264.6	112.8	국(국토해양부)					
29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4	도	132.0	4.3	국(국토해양부)					
30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5	도	185.0	114.0	국(국토해양부)					
3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5-1	도	1406.3	406.7	국(국토해양부)					
32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6-13(146-6)	임	7.8	7.8	국(산림청)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3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6-14 (146-8)	임	120.6	120.6	국 (산림청)					
34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6-15 (146-9)	임	4.5	4.5	국 (산림청)					
35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6-16 (146-9)	임	320.3	320.3	국 (산림청)					
36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6-18 (146-12)	임	461.5	461.5	국 (산림청)					
37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7-1 (147)	전	131.5	131.5	한영자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971				
38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8-1 (148)	전	217.8	217.8	김용일	군산시 동수송안길 23				
39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9-5 (149)	전	188.6	188.6	이태훈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30길 27, 112동 404호				
40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9-6 (149-1)	전	162.8	162.8	김기심	군산시 옥도면 신신도2길 9-3	군산농업협동조합	군산시 번영로 162 (삼학점)		
4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9-4 (149-3)	임	7.3	7.3	이진석	군산시 상신2길 26-1, 403호				7015/80146
						유태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9 이매촌 1101동 1901호				2025/80146
						유란숙	군포시 산본동 1119 백두아파트 993동 702호				30446/80146
						이동덕	군포시 금정동 871-11 다산아파트 320동 1504호				6610/80146
						우명자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180-15				9917/80146
						박영자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346				3306/80146
						유태욱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1-2 우성아파트 29동 1405호				4959/80146
						박현성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45 오성은하아파트 2동 401호				1653/80146
						허순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4 현대아파트 102동 303호				4959/80146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9-4 (149-3)	임	7.3	7.3	정순례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4가 147-3				3306/80146
						정상재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19-6				2644/80146
						진재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 기자촌아파트 222동 906호				3306/80146
42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50-1 (150)	전	104.4	104.4	고광수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42길 16, 101동 604호				
43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51-2 (151)	전	151.6	151.6	국(국토해양부)					
44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51-1	도	477.4	163.1	국(국토해양부)					
45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52-2 (152)	전	23.4	23.4	박태일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81				
46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52-1	도	11.0	10.8	국(국토해양부)					
47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58-14 (158-3)	전	58.8	58.8	군산시					
48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58-15 (158-4)	전	108.8	108.8	이숙영	군산시 미장안길 55, 201동 1505호				
49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58-16 (158-9)	임	37.7	37.7	최복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3길 28				
50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58-17 (158-10)	임	52.7	52.7	옥구군					
5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58-18 (158-12)	임	118.4	118.4	김환철	고창군 부안면 원당길 50				
52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58-19 (158-13)	임	73.0	73.0	군산시					
53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86-1	도	56.8	36.0	국(건설교통부)					
54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87-3 (187-1)	구	41.6	41.6	국(농림축산식품부)					
55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87-5 (187-2)	구	136.2	136.2	국(농림축산식품부)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56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88	도	473.2	326.7	국(건설교통부)					
57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88-1	도	261.9	107.2	국(건설교통부)					
58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93-3	도	127.9	3.4	국(건설교통부)					
59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98-2(198)	답	806.4	806.4	정영수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05-36				
60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98-4(198-1)	답	467.0	467.0	고부곤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15				
6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00-2(200)	답	267.2	267.2	김옥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95				1/2
						최정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7				1/8
						최정규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 127동 802호				1/8
						최정구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길 82-2				1/8
						양준호	군산시 성산면 큰골길 36				1/8
62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00-3(200-1)	답	151.7	151.7	김옥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95				1/2
						최정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7				1/8
						최정규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 127동 802호				1/8
						최정구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길 82-2				1/8
						양준호	군산시 성산면 큰골길 36				1/8
63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01-1(201)	답	246.8	246.8	문영석	군산시 수송동로 36, 101동 401호				
64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02-3(202-2)	답	290.4	290.4	김경애	군산시 신평3길 4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65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03-1(203)	답	234.9	234.9	강영근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9-3	군산농업협동조합	군산시 번영로 162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6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04-1 (204)	답	243.3	243.3	김대만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1길 18				
67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12-2 (212-1)	답	1353.0	9.7	김종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9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68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39	도	1158.0	845.8	국(국토해양부)					
69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41-2 (241)	구	7918.0	116.8	국(국토해양부)					
70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41-3 (241)	구	7918.0	31.1	국(국토해양부)					
7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43	도	960.5	0.3	국(국토해양부)					
72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47-5 (247)	잡	7444.0	35.7	김창수	송탄시 지산동 777				11570/16903
						심교섭	평택시 장당동 633 우미이노스빌아파트 101동 1001호				5333/16903
73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48	잡	1759.0	61.2	군산시					
74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49	도	4717.0	963.9	군산시					
75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	임	1196302.0	1161.9	국(산림청)					
76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3 (산17-8)	임	2429.0	2429.0	국(산림청)					
77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9	도	91.0	27.9	국(국토교통부)					
78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5 (산17-12)	임	7367.0	220.0	국(산림청)					
79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41-60 (산41-1)	임	66009.0	22.0	유태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9 이매촌 1101동 1901호				2025/80146
						유란숙	군포시 산본동 1119 백두아파트 993동 702호				29110.4155/80146
						이동덕	군포시 금정동 871-11 다산0파트 320동 1504호				6610/80146
						우명자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180-15				9917/80146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9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41-60 (산41-1)	임	66009.0	22.0	박영자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346				3306/80146
						유태욱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1-2 우성아파트 29동 1405호				4959/80146
						박현성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45 오성은하아파트 2동 401호				1653/80146
						허순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4 현대아파트 102동 303호				4959/80146
						정순례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4가 147-3				3306/80146
						정상재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19-6				2644/80146
						진재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222동 906호				3306/80146
						김영미	군산시 축동로 188, 101동 606호				5362/80146
						장용신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28길 21, 나동 402호				1653/80146
						김경임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 32, 109동 804호				1335.5845/80146
80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41-58 (산41-16)	임	1360.0	1360.0	정경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8-2 아중현대아파트 106동 301호				1960/3283
						이덕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8-2 아중현대아파트 102동 404호				1323/3283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41-59 (산41-46)	임	1084.0	1084.0	유태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9 이매촌 1101동 1901호				2025/80146
						유란숙	군포시 산본동 1119 백두아파트 993동 702호				30446/80146
						이동덕	군포시 금정동 871-11 다산아파트 320동 1504호				6610/80146
						우명자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180-15				9917/80146
						박영자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346				3306/80146
						유태욱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1-2 우성아파트 29동 1405호				4959/80146
						박현성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45 오성은하아파트 2동 401호				1653/80146
						허순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4 현대아파트 102동 303호				4959/80146
						정순례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4가 147-3				3306/80146
						정상재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19-6				2644/80146
						진재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 기자촌 아파트 222동 906호				3306/80146
						김지선	군산시 설림5길 57, 302호				7015/80146
82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78	도	539.0	485.1	국(건설교통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8	임	분묘	단장	1기	1기	국(산림청)		
2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41-46	임	분묘	단장	1기	1기	유태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9 이매촌 1101동 1901호	2025/80146
								유란숙	군포시 산본동 1119 백두아파트 993동 702호	30446/80146
								이동덕	군포시 금정동 871-11 다산아파트 320동 1504호	6610/80146
								우명자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180-15	9917/80146
								박영자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346	3306/80146
								유태욱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1-2 우성아파트 29동 1405호	4959/80146
								박현성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45 오성은하아파트 2동 401호	1653/80146
								허순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4 현대아파트 102동 303호	4959/80146
								정순례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4가 147-3	3306/80146
								정상재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19-6	2644/80146
								진재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 기자촌아파트 222동 906호	3306/80146
								김지선	군산시 설림5길 57, 302호	7015/80146
3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87-2	구	컨테이너	철재판	3동	72㎡	국(농림축산식품부)		
4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	임	가건물	철재판	2동	87㎡	국(산림청)		
5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6-8	임	컨테이너	철재판	3동	140㎡	국(산림청)		
6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6-9	임	가건물	블록스레트	1동	16㎡	국(산림청)		
7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2	도	가건물	스레트	2동	132㎡	서홍석	대전시 중구 문화동 372-2, 평화아파트 415호	

의 견 서

1. 제 목		고군산군도 내부도로(신시선 1공구) 개설공사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군 산 시 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소연 / 공보담당관 / 2021-02-01 10:43:18